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11월 10일 18시 04분



# 목차
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문화예술과	3
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	3

##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

작성일 2023.04.12 10:09 조회수 298 수정일 2023.04.12 00:00

✓ 민원사무명	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
✓ 민원내용	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
✓ 관계법령	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
✓ 구비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신청서</li><li>○ 등록증</li><li>○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<li>○ 변경사항 증명하는 서류</li><li>○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</li></ul>
✓ 처리부서	문화예술과
✓ 협의부서	
✓ 접수	민원지적과
✓ 수수료	조례
✓ 처리기간	3일
✓ 기타사항	
✓ 흐름도	① 민원인신청 →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→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→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 → ⑤ 현지확인 → ⑥ 기안·결재 → ⑦ 등록증 작성 → ⑧ 민원인 교부
✓ 기타참고사항	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 **[별지 제29호서식]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(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** (1343 hit/ 19.0 KB) ↓[미리보기](#)

이전글

영화비디오업 영업자지위승계 신고

다음글

비디오물 제작(배급)업 변경신고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# Yeosu Web Contents

